

### 3.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개정조례(안)

#### 심 사 보 고 서

2003 . 12 . 16 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1월 18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12. 16)상정 ·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)

##### 가. 개정이유

- 전자문서를 종합적 ·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등록과 폐기절차의 일부 변경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보광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및 보존하는 규정을 추가함(안 제8조 별자 제2호의2).
-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신고 후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함(안 제9조제2항).
- 공인 재등록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삭제 후 재등록 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함(안 제9조제4항).
-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함(안 제9조제5항).
-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· 재교부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 광고를 의무화하고,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).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생 략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5. 토 론 요 지 (없 음)

6. 수 정 안 의 요 지 (없 음)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